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 - 837호

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77호(2007.06.07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호(2008.05.22.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76호(2013.03.14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6호(2014.01.1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5-34호(2015.05.21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호(2017.01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-53호(2017.06.08.)로 사업시행변경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8-20호(2018.02.08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8-28호(2018.03.1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8-103호(2018.11.01.)로 사업시행변경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43호(2019.05.09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9-94호(2019.07.25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도서가 제출되어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하고,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4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0. 6. 4. ~ 2020. 6.18.(14일간)

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

- 1) 은평구 도시계획과(☎ 02-351-7425)
- 2)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02-303-1794)

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

라.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내용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412일대(면적 : 31,796.6㎡)
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 :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김미환)
 - 주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4길 5-3, 4층(수색동)
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
- 5)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5월 21일(區고시 34호, 2015. 5.21.)
- 6) 건축계획 : 공동주택 8개동 672세대(임대 116세대포함), 지하3층/지상22층 및 부대복리시설
- 7) 변경내용

○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

- 당초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변경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

○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

- 당초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56, 2층(수색동)
- 변경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4길 5-3, 4층(수색동)

○ 정비사업비의 변경

- 당초 : 250,939,398 천원
- 변경 : 272,413,436 천원

8) 기타사항 :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참조

마. 기타사항

- 1) 주민 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,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